

강남탄천파크골프장 CCTV 구매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「강남탄천파크골프장 CCTV 구매설치」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안전관리, 범죄예방 등 다목적 용도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1. 설치목적

- 강남탄천파크골프장 시설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

2. 관련근거
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-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

3. CCTV 설치내용

- 강남탄천파크골프장

주 소	서울 강남구 세곡동 2-5
설 치 대 수	15대
촬 영 범 위	붙임 배치도 참조
촬 영 시 간	24시간 연중

4. 공고방법 : 강남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시

5. 공고(의견제출) 기간 : 2025. 2. 6. ~ 2. 26.(20일간, 초일불산입)

6. 의견제출

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-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우편
 - 주소 : 강남구 밤고개로1길 52 강남스포츠문화센터 2층 사무실
-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체육사업1팀(02-2176-0813)

※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- 붙임 1. 의견제출서 1부
2. CCTV배치도 1부.